

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. 11. 28 선고 2024가단2049 판결 [부당이득금 반환 등]

## 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24. 11. 14.

판결 선고 2024. 11. 28.

## 주 문

- 피고는 원고에게 39,5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. 10. 9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-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## 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## 이 유

### 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(다만, '채권자'는 '원고', '채무자'는 '피고'라 한다).

## 2. 인정근거

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**판사오승이**

별지